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5,407,331	13,362,220
일반회계	398,368,276	11,951,048
특별회계	47,039,055	1,411,172
공기업특별회계	25,852,768	775,583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3,147,100	394,413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2,705,668	381,170
기타특별회계	21,186,287	635,589
주택사업특별회계	63,575	1,907
농어촌뉴타운특별회계	2,479,848	74,395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476,300	14,28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494,152	44,825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520,640	45,619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100,000	33,000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710,522	201,316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53,623	37,609
수질개선특별회계	5,682,663	170,4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도시개발특별회계	304,964	9,14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99,65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경비 3.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